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111호

나. 발 의 자 : 이태성 의원(찬성자 15명)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와 “필수업종”의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7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요건과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사.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2021.5.18.)·시행(2021.11.19.)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발의 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2020.12.14.),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음(2021.5.18.).

〈 「필수업무종사자법」 주요 내용 〉

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
마.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시행[1] 하면서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거나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조례에 일부 포함되었음.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1.7. 제정·시행 되었음.

○ 이에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에 법률 시행일(2021.11.19.)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 주요 조문별 검토

⑴ 정의 및 적용대상의 변경 등(안 제2조・안 제3조)

○ 개정안은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하고, 법률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외에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2조제2호 가목・나목).

○ “필수노동자”또한 법률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업무종사자로 규정하고,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음(안 제2조제3호 가목・나목).

「필수업무종사자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삭 제>

○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조례상의 “필수업종” 대신 “필수업무”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재난대응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리, 서무 등의 지원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고, 필수업종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비필수업종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제9조)은 지역적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하는 업무와 사람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각각 추가한 것임.

○ 한편, 개정안은 대면업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대면업무로 한정하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해 대면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지원대상을 넓히고 있음.

○ 다만, 조례의 목적(제1조)에서 여전히 대면업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현 행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밖에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가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필수노동자)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임.

⑵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에서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음.

○ 이는 재난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명시하여 유사시에 조례 적용상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목적을 강화하려는 것임.

⑶ 지원계획 포함사항의 변경(안 제6조)

○ 개정안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재난 발생시에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목적이 발생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지원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삭제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등) ① ---------- 발생시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한편,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정부 지원계획에 ‘법 · 제도의 개선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도 ‘제도 개선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⑷ 위원회 기능의 변경(안 제9조)

○ 개정안은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시·도별 지역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춰 필수노동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필수업무종사자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 필수노동자에 대한 ----------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 규정된 법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과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임.

○ 다만,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지역위원회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위원회로 규정하고, 그 명칭을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필수노동자위원회도 "심의·자문"이 아닌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의----------서울특별시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⑸ 위원 정수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안 제10조)

○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에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신 설>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 ② ------ 시장----------. ③ ---------- 시장----------.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정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부 위원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점을 참고한 것임.

○ 또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시·도 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장급 공무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노·사 단체와 재난·노동 관련 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 다만, 정부 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처별 공무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위촉직 40%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도 위원의 자격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서울시 부서별 공무원과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⑹ 위원회 소집 요건 명확화(안 제14조)

○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집 요건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규정한 지역위원회 소집 요건을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한 것이며, 재난 발생과 긴급대응을 전제로 하는 법률과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사전통보(7일 전까지)는 삭제되었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지원계획,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음.

○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조례의 목적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 위원회화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변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비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필요가 있음.

○ 한편, 조례의 시행(2021.1.7.) 이후 현재까지 필수노동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도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참고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8182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